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2157 |
|------------|------|

발의 연월일 : 2011. 8. 18.
발의자 : 나정숙 의원
외 9인

□ 개정이유

-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 취소 규정을 표준안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보육시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별첨서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예산수반사항 : 201,173천원

- 평가인증보육시설 시설개보수비용(추정) : 40,000천원

$$- 1,000,000원 \times 40개소 = 40,000,000원$$

※ 평가인증시설은 2011. 7. 31일 현재 437개소이며 시설개보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범위는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

○ 안전공제회 가입비 : 54,170천원

- 20명이하 시설 447개소 × 50,000원 = 22,350,000원
- 21~39명이하 시설 132개소 × 80,000원 = 10,560,000원
- 40~100명이하 시설 95개소 × 120,000원 = 11,400,000원
- 101명이상 시설 58개소 × 170,000원 = 9,860,000원

○ 공제료 : 107,003천원

- 21,882명 × 4,890원 = 107,002,980원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를 “제2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단, 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받을 수 없다.”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시설운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시설운영관리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 공제료,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항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생략)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p> <p>④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⑤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 <p>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현행과 같음) ②..... 1. 2. 3. 4.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단, 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받을 수 없다. <삭제></p> <p>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p> |
|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생략) ②(생략) ③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신설></p> |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 공제료,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2157 |
|----------|------|

제안년월일 : 2011. 9. 1.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을 최소화하여 명시하고, 평가인증 시설 개보수비 지원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함(안 제20조).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3항 “시설운영관리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 공제료,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설운영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설 개보수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생략) ②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u>③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u></p> <p><u>④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u> <u>⑤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 <p>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현행과 같음) ②..... 1. 2. 3. 4. <u>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단, 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받을 수 없다.</u></p> <p><u><삭제></u></p> <p><u>④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u></p> | <p>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현행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p> <p><u>③(개정안과 같음)</u></p> <p><u>(개정안과 같음)</u></p> <p><u>④(개정안과 같음)</u></p> |
|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생략) ②(생략) <u>③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p><u><신설></u></p> |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u>③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공제료,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 <p>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u>③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p><u>④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